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소유권용) 약관

2021.04

목 차

□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소유권용)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
  제 4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5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 조 (보험금 지급 또는 합의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
  제 9 조 (보험계약의 유지)
  제 10 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11 조 (보장의 제한)
  제 12 조 (보험가입금액의 감소 및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
  제 13 조 (보험금의 분담)
  제 14 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제 15 조 (손해방지의무)
  제 16 조 (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7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8 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9 조 (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제 20 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1 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 22 조 (청약의 철회)
  제 2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24 조 (계약의 무효)
  제 25 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 26 조 (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 27 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8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 3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31 조 (계약의 해지)
  제 32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 33 조 (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4 조 (분쟁의 조정)
  제 35 조 (관할법원)

제 36 조 (소멸시효)
제 37 조 (약관의 해석)
제 38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 3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40 조(개인정보보호)
제 41 조 (준거법)
제 4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소유권용) 특별약관

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관 련 법 규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소유권용)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권리상의 하자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성명이 기재된 당사자 및 그 상속인, 수증자, 유족, 대리인 또는 법적 승계인을 비롯하여 법률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하며, 기명된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도 회사가 기명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나 항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또는 확인서):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보험증권에 기재된 법률상 부동산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다만, 목적 부동산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지역의 경계선 밖의 부동산 및 인접하는 거리, 도로, 수로에 대한 권리, 다른 소유권이나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마. 보험금 청구인: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청구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시일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자로서 회사의 승낙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용어
   가. 정착물 : 토지에 부속된 건물, 설치물 및 기타 정착물중 법률상 부동산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저당권 :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기타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다. 알고 있는 : 약관에 정의된 공적기록 또는 목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려주는 여타 등록에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 목적 부동산 :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다만, 목적 부동산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지역의 경계선 밖의 부동산 및 인접하는 거리, 도로, 수로에 대한 권리, 다른 소유권이나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법률 : 법률과 명령, 규칙, 규정, 고시 등 그 하위 법령 및 정부의 규제를 말합니다.
   바. 저당권 :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기타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사. 소유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 공적기록 :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기부, 「건축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건축물대장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법」에 의해 관리되는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말합니다.
   자. 등록: 등기부 및 대장에 등기 또는 등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의 권원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그 신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다.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라. 매도인이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마. 매도인이 의사무능력자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바. 매도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사.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용어풀이】
   *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 :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이라 칭하고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자. 회사, 조합, 신탁, 기타법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수권없이 이루어지는 권원의 이전 또는 양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용어풀이】
   * 수권(授權) :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 시】
   법인부동산 거래시에는 법률 또는 정관 등 규정 의거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대리권 행사로 이루어지는 권원의 이전 또는 양도 행위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3.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완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4. 목적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한 권원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대행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피보험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등기업무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② 회사는 보험증권상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이 약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2.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3.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 규제 또는 금지하는 법률(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을 포함함)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사항
   나. 목적 부동산 중 기존의 정착물 또는 장래에 설치될 정착물의 특성, 면적, 위치에 대한 사항
   다. 소유권의 대상인 목적 부동산의 분할, 목적 부동산의 면적 변경, 목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과거에 포함되었던 필지의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
   라.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4. 제3호와 같은 법률의 위반에 따른 효과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5. 제3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정부 또는 행정당국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6.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목적 부동산의 수용, 환매, 몰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7. 보험개시일자 현재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불리한 청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으로서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보험금 청구인이 설정, 부담, 인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합의한 권리제한
   나. 회사는 해당 권리제한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으나, 보험금 청구인은 그러한 권리제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금 청구인이 이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일자 이전에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
   다. 보험금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제한
   라. 보험금 청구인이 이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부동산 또는 권리에 대한 가액을 지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였을 권리제한



【예 시】
매수인(보험계약자)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매도인과 합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은 며칠 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된 날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이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보험계약자)을 상대로 『소유권말소청구의 소』또는 경매신신청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8. 『파산, 화의, 회사정리,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용어풀이】
매수인(보험계약자)이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 등의 사유를 모르고 취득한 소유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 및 처분이 제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9.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수권, 용수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와 관련된 손실이나 손해

【용어풀이】
* 용수권(用水權) :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10. 산림, 광물, 석유, 가스 및 탄화수소 등 천연자원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1. 제3자가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소유권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및 손해
12. 이 약관 제34조(분쟁의 조정), 제35조(관할법원), 제37조(약관의 해석) 및 제41조(준거법)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기타 쟁송기관에 제기된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집행에 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3. 전쟁, 반란, 폭동, 사회불안, 적군의 행위, 전염병, 격리조치, 정부조치, 국유화, 천재지변 또는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이와 유사한 사유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4. 통일에 의해 야기되는 소유권 회복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② 아래 각 호의 손실 및 손해는 이 약관의 부보 범위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경비,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과세당국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으로서 보험개시일자 현재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목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 점유자에 대한 질의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실, 권리, 또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권, 지역권 부담 및 기타 사항으로써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용어풀이】
* 지상권(地上權)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을 말합니다.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지역권(地役權) :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4.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측량조사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불일치, 경계선의 상충, 면적의 부족, 부동산에 대한 침범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공적기록에 등록되지 아니하나 법률상 이미 부여, 부과되었거나 또는 장차 부여, 부과될 용역, 노무 또는 물품 관련 제한이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용어풀이】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6. 목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7.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청구로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아래 '가'목 내지'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간석지, 침수지, 강, 호수, 시내 및 개울 등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는 수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러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나. 충적, 침식, 분리 등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한 수로 또는 해안의 변경을 사유로 한 권리 또는 이익
다. 해안이나 수중에서의 어획, 수영, 수렵 및 여타의 사용목적을 위한 상속권, 하천부지 소유자의 권리 및 용수권 관련 권리 기타 법적인 권리 또는 이익
라. 섬, 부두, 방파제 및 항구 기타 목적을 위한 매립지와 관련한 권리 또는 이익



【용어풀이】
본 약관에서 피보험이익은 소유권에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로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어업권, 어업권의 상속권, 하천사용권, 용수권 등)에 발생한 소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8.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추가하여,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하자, 제한 기타 사항들 중에서 손실 또는 손해의 근거가 되는 사항과 손실액 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 회사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보험증권상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⑥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 수임인의 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그 작성일이 보험개시일자 이전 또는 이후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반 증빙자료를 회사의 수임인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 검토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위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의 수임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작성일이 보험개시일자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로서 제3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상기 본 조 제6항의 제반 증빙자료를 조사,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⑧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공한 모든 기밀 정보는, 그 정보의 공개가 보험금 청구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의 조사에 불응, 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미제공 및 거부, 제3자로부터의 정보 획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상 회가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 가지급보험금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보험금 지급 또는 합의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아래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소멸됩니다.

1. 보험금의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의 경우
   가.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의 제공과 함께 회사가 승인한 제반비용을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의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부담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나. 회사가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본 호에서 규정한 지급의무를 제외하고,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멸되며, 보험증권은 회사에 양도되어 말소됩니다.
2. 피보험자를 제외한 당사자 또는 보험금 청구인에 대한 지급 또는 그들과의 합의

가. 보험금 청구인을 대신하여 또는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로 이 보험증권상 보상되는 청구금과 회사가 지급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인이 부담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으로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나. 이 약관에 규정된 손실이나 손해를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가 지급할 때까지 부담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으로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비용과 함께 보험금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다. 회사가 위의 '가'목 또는 '나'목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지급을 할 의무를 제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소송이나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 진행할 의무를 비롯하여 청구 받은 손실이나 손해에 관한 이 보험증권의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종료합니다.

제 9 조 (보험계약의 유지)

① 소유권이 양도 기타 이전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 및 이 보험증권의 부보범위는 이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매매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은 유효합니다. 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였거나 매매대금에 관한 저당권부 채권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 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을 말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보험증권은 이 약관에 부보된 사항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보험금 청구인의 실제적인 금전적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이며, 그 보상범위는 이 약관에 기재된 바에 한정됩니다.

1. 보험증권상 회사의 책임은 아래 '가'목 또는'나'목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나. 피보험 부동산 또는 권리의 가액과 이 약관에 의해 부보된 하자, 부담, 권리 또는 담보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피보험 부동산 또는 권리의 가액간의 차액
2. 회사는 이 약관 제19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에 따라 발생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장의 제한)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소유권이 확실하게 취득되도록 하는 경우
   2. 주장된 하자, 제한, 부담, 권리 또는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경우
   3. 합리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소송이나 기타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②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부보된 소유권에 불리한, 관할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그에 관련한 모든 불복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청구 또는 소송의 해결을 위해 피보험자가 임의로 인수한 채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보험가입금액의 감소 및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이 보험증권에 의해 지급된 모든 지급액만큼 이 보험증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됩니다.

제 13 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액}}{\text{다른 계약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액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제 14 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 15 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16 조 (대위권)

① 회사의 대위권

1.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청구에 대해 합의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대위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권리는 보험금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청구인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로 소송, 화해 또는 합의하고, 이러한 권리 또는 구제 수단과 관련된 모든 거래,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는 피보험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약정, 보증이나 다른 보험증권상의 권리가 포함되며, 다른 보험증권 기타 관련 문서가 회사의 대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약관에 따른 회사의 대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7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8 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는 등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뚜렷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위험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9 조 (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보험금 지급 또는 합의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3자가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제기하는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이나 피보험저당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방어해 드립니다. 회사는 이러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대리할 변호사 선임권을 가지되, 회사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의 부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발생시킨 수수료, 비용, 경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또한 회사가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은 수수료, 비용, 경비에 대하여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소유권 또는 피보험저당권의 권리를 입증하거나 손실 및 손해를 방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소송 제기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는 이 약관상 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약관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보험증권상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합니다.

④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불리한 유권해석, 판결, 법령, 명령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불복할 권리도 갖습니다.

⑤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소송 제기, 방어 및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 보장하며 회사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의 명의사용을 허용합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1.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증거, 증인의 확보, 소송 제기 및 방어,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보험증권상의 소유권 또는 피보험저당권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리적인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그러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회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제 20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 및 권리조사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이 초과된 계약이나 권리조사확인서가 발급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중 한가

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4 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본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또는 권원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25 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개시일 전 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이나 추가적인 확인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 27 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부터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을 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 이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등(이중매매 제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보장은 종료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풀이】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 3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31 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33 조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4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7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3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0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소유권용) 특별약관

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 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 5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용어 해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설명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관련 법규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 · 특성 · 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 · 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 ·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